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2. 효력발생일 : 2018.5.31
3. 주요 정정 내용 : 환매수수료 삭제 ,A-e클래스 신설
4. 집합투자규약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Class A-e 신설	<신설>	15. Class A-e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 (온라인)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Class A-e 신설	<신설>	15. Class A-e 수익증권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	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삭제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제39조(보수)	Class A-e 신설	<신설>	15. Class A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4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2
제40조(판매수수료)	Class A-e 신설	②선취판매수수료는 -<생략>- 한다. <신설>	②선취판매수수료는 -<이하 동일>- 한다. 3. Class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
제41조(환매수수료)	환매수수료 삭제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	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

		<p>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lass C-P1, Class C-P1e, Class S-P, Class C-P, Class C-Pe, Class C-F2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(Class C-P1, Class S-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'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'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

		<p>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 신탁 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-생략-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 신탁 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-이하동일-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삭제>